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55 발의연월일: 2025. 3. 5.

발 의 자:김선민·김재원·김준형

강경숙 • 백선희 • 박은정

신장식 · 서왕진 · 정춘생

한창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효율적 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9조).

법률 제 호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국가정신건강위원회)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(이하 "국가정신건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2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국가정신건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,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국

가보훈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국무조정실장, 법제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이 된다.

⑤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 한다. ⑥ 그 밖에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
(b) 그 밖에 국가정신건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9조(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 제9조(국가정신건강위원회) ①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책의 심의)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5조에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 위원회(이하 "국가정신건강위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1. 국가계획의 수립 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1.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2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 관한 사항 의 발전 2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 의 발전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국가정신건강위원회는 위원 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다. ③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, 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

 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

 위원으로 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, 교육부장관, 행정안전부 장관, 국가보훈부장관, 문화체 육관광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여성가 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국 무조정실장, 법제처장 및 위원 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 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된다.

⑤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 한다.

⑥ 그 밖에 국가정신건강위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